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2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김도읍·조배숙·권영세

인요한 • 장동혁 • 박성훈

정연욱 • 구자근 • 조지연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,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(우리나라는 1952.12.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)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. 우리나라는 조종사·항공교통관제사·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,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더불어, 국토교통부장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위하여 항공교 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·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의 신설(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)
 -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권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 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
- 나.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상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해 '전문항공교통관제사' 자격을 신설하고,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(안 제34조제2항, 제35조제7호의2)
- 다. '전문항공교통관제사' 자격의 한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(안 제37조의 및 별표)
- 라.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, 최소 근무경력 등을 포함하는 정기 심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7조의3)
- 마.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·변경에 대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,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 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)
- 바.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

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(안 제42조의2 및 제135조제5항)

- 사.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· 취소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3조제1항·제3항·제5항· 제6항·제7항)
- 아.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집행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(안 제134조제9호)
- 자.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 공정보·항공지도를 제공 또는 발간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(안 제132조제1항·제2항)
- 차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, 관제 지식·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136조제1항 제13호의2·제14호·제15호 및 제16호의2)
- 카. 관제시설에서 자체 시행하는 심사를 통해 취득한 한정증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(안 부칙 제1 조 및 제2조)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"공역(空域)"을 "공역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의2. "항공교통관제 업무"란 항공기(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·무 선 통신 등을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 다만,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.
 - 가. 비행장관제업무: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(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) 및 주위 공역(空域)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,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
 - 나. 접근관제업무: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,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

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

- 다. 지역관제업무: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관제구(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,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
- 라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26의2. "항공교통관제시설"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비행장관제탑: 비행장 또는 공항에서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
 - 나. 접근관제시설: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(경량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를 대상으로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시설
 - 다. 지역관제시설: 관제구(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
 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아닌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- 제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"조종사"를 "조종사, 전문항공교통관제사"로

한다.

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전문항공교통관제사

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7조의2(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과 업무범위 등) ① 제36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종류, 업무의 수행방식 및 각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명을 한정한다. 이 경우 한정 및한정에 따른 업무범위(이하 "한정업무범위"라 한다)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한 정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37조의3(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 심사 및 자격증명의 한정 정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.
 - ②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며, 해당 기량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, 기준,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자격증명"을 "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(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변경·추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한정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을 심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충족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춘 사람일 것
- 2.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
- 3. 자격증명의 한정업무범위로 정해진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국토교 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추었을 것

제38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·심

사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 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정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3제1항 중 "제38조제4항"을 "제38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2호 중 "제35조제7호"를 "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"로 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2조의2(항공교통관제사 적성검사)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항 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(이하 "관제적성검사"라 한 다)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.
 - ③ 관제적성검사의 적격 판정기준,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 제목 "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)"을 "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증명·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6호의2, 제6호의3"을 "제6호의4, 제6호의5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4 및 제6호의5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,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"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"를 "사람,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"로, "항공신체검사를 받을"을 "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및 제3항"을 "제1항,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.

- 6의2. 제3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 교통관제사가 한정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
- 6의3.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기량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량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 합격하는 경우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

검사를 받은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제44조제4항 중 "제43조제1항·제4항"을 "제43조제1항·제6항"으로 한다.

제45조제6항 전단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제1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(제85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 명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,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자 및 항공지도를 발간하는 자

제13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, 항공정보를 생산·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를 발간을 위한 시설

제1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제43조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격증명등, 항공신체검사 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

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호의2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적성검사를 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·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기관·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135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42조의2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

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 중 "제10항의 규정"을 "제10항"으로, "수탁기관"을 "위탁받은 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"제38조제3항"을 "제38조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제15호 중 "제38조제4항"을 "제38조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13의2.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 심사에 응시하는 자

16의2.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별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

- 1.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의 보조
- 2. 제2조제5호의2 라목에 따른 업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2조제1항제4호·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42조의2, 제43조제5항·제6항(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) 및 제134조제9호(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)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

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등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한정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현 행 개 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"항공교통관제 업무"란 <신 설> 항공기(경량항공기, 초경량비 행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간 또는 항공기 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 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 •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말한다. 다만,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 외한다. 가. 비행장관제업무: 제35조 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 교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(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) 및 주 위 공역(空域)에서 운항하 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 하고, 항공기에 항공교통 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

<u>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</u> 달하는 업무

나. 접근관제업무: 제35조제7
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
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
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
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
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,
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
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
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
업무

다. 지역관제업무: 제35조제7 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 통관제사가 관제구(접근관 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,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

<u>라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</u> <u>로 정하는 업무</u>

6. ~ 10의5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

6. ~ 10의5. (생 략) 11. "비행정보구역"이란 항공기,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 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 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<u>공</u> 역(空域)으로서 「국제민간항 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 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,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·공고한 공역을 말한다. 12. ~ 26. (생 략) <신 설>

<u>역</u>
12. ~ 26. (현행과 같음)
26의2. "항공교통관제시설"이란
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
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다
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가. 비행장관제탑: 비행장 또
는 공항에서 비행장관제업
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
<u>치·운영하는 시설</u>
나. 접근관제시설: 비행장 또
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
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
는 항공기(경량항공기, 초
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.
이하 이 호에서 같다)를 대
<u> 상으로 접근관제업무를 수</u>
행하기 위하여 설치 • 운영

27. ~ 34. (생 략)

- ① (생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 을 수 없다.
-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 이 미만인 사람

가. • 나. (생 략)

리사 자격: 21세

2. (생략)

하는 시설

- 다. 지역관제시설: 관제구(접 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 제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 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시 설
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아닌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27. ~ 34.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) 제34조(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 다. ---- 조종사, 전문항공교 통관제사 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략)

제35조(자격증명의 종류) 자격증 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8. • 9. (생략)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자격증명의 종류) 자격증 제35조(자격증명의 종류) -----

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7의2. 전문항공교통관제사

8. • 9. (현행과 같음)

제37조의2(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과 업무범위 등) ① 제36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 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종류, 업무의 수행방식 및 각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명을 한정 한다. 이 경우 한정 및 한정에 따른 업무범위(이하 "한정업무 범위"라 한다)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 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는 한정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7조의3(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 심사 및 자격증명의 한정

제38조(시험의 실시 및 면제) ①
<u>자격증명을</u> 받으려는 사람은 국
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
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

정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심사할 수 있다.

- ②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 시하는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 며, 해당 기량 심사에 합격하여 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, 기준,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∥38조(시험의] 실시	및	면제])	1
전문항공교	통관제	사	리의	자	격
증명					

한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을 받으려는 경우(전문항공교통 관제사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변 경·추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한정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전문항공 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을 심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항공교 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

 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춘

 사람일 것
- 2.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이수하였을 것
- 3. 자격증명의 한정업무범위로 정해진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1. ~ 5. (생략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제39조의3(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
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
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추었
<u>을 것</u>
<u>4</u>
<u>제1항부터 제3항</u>
<u>까지의 규정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
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
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
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
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
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<u>⑤</u> <u>제1항부터</u>
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
<u>· 심사</u>
이 경
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등 국토
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경우 한정업무범위에 관한
사항을 포함하여 자격증명서를
발급하여야 한다.
39조의3(항공종사자 자격증명

서의 대여 등 금지)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(이하 "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"라 한다)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・③ (생략)

- 제40조(항공신체검사증명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제35조제7호</u>의 자격증명을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
 - ② ~ ⑦ (생 략) <신 설>

	서의 대여 등 금지) ①
	<u>제38</u>
	조제5항
	<u>.</u>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	40조(항공신체검사증명) ①
	1. (현행과 같음)
	2.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-
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	42조의2(항공교통관제사 적성
	검사)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
	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
	으려는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

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 업무에

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

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

제43조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 명의 한정(이하 이 조에서 "자 격증명등"이라 한다)을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6호의2, 제6호의3, 제15호 또는 제3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 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

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(이하 "관제적성검사"라 한다)를 받아 야 한다.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적 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 을 수 없다. ③ 관제적성검사의 적격 판정기 준,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한다. 제43조(자격증명 · 항공신체검사 증명 •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 의 취소 등) ① --------. ------ 제6호의4, 제6 호의5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6의2. · 6의3. (생략)

7. ~ 31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 략) <신 설>

- 6의2. 제37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한정업 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
- 6의3.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기량 심사를 받지 아니하 거나 기량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
- 6의4. · 6의5. (현행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같음)
- 7. ~ 31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 호의3에 따라 자격증명등의 효 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38조제3 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 합격하 는 경우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 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취소

④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,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.
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(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 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<u>제43조제1항·제4항</u> 을 준용한다.

<u>하여야 한다.</u>
<u>⑥</u>
<u>사람, 항공신</u>
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
항공신체검
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-
<u>⑦</u> 제1항, 제4항 및 제5항
<u>.</u>
144조(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
증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제43조제1항·제6항</u> -
·.

제45조(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) ① 제45조(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) ① ~ ⑤ (생 략) ~ (5) (현행과 같음)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 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 ----- 제6항-----한다. 이 경우 "자격증명등"은 "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"으로 본다. 제132조(항공안전 활동) ① 국토 제132조(항공안전 활동) ① ----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 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.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자(제85조에 따른 항공교 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),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자 및 항공지도를 발간하는 자 5. ~ 7. (생략)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

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

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 공기,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, 항행안전시설,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 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 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③ ~ ⑨ (생 략)

제134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~ 8의2. (생략)

(=3, 3, 3, 3, 4,)
1. ~ 4. (현행과 같음)
 ~ 4. (현행과 같음) 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 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 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, 항공정보를 생산·제공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 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, 항공정보를 생산·제공 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 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, 항공정보를 생산·제공 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 를 발간을 위한 시설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 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, 항공정보를 생산·제공 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 를 발간을 위한 시설 ③ ~ ⑨ (현행과 같음)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 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, 항공정보를 생산·제공 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 를 발간을 위한 시설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134조(청문)
5.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 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, 항공정보를 생산·제공 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 를 발간을 위한 시설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134조(청문)

9.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 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

10. ~ 25. (생 략) 제1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제 ~ ③ (생 략)

④ 삭 제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한국교통안전공단"이라 한다)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후 단 신설>

1. (생 략) <신 설>

9. 제43조제1항, 제4항 또는	제 <u>5</u>
항에 따른 자격증명등, 항공	<u> 신</u>
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]검
사 적격 판정의 취소 또는	ট্র
<u>력정지</u>	
10. ~ 25. (현행과 같음)	
]1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1
~ ③ (현행과 같음)	

⑤	
	a

의2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구축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기관·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42조의2에 따른 관제적

- 2. ~ 14. (생략)
- ⑥ ~ ⑩ (생 략)

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

제136조(수수료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한다. 다만, 제135조제2항,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한다.

1. ~ 13. (생 략) <신 설>

- 14. <u>제38조제3항</u>에 따라 항공종 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받으려는 자
- 15. <u>제38조제4항</u>에 따라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

16. (생략)

성검사에 관한 업무
2. ~ 14. (현행과 같음)
⑥ ~ ⑩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
일부개정법률
제136조(수수료 등) ①
<u>위탁받은 기관</u>
<u>.</u>
1. ~ 13. (현행과 같음)
13의2.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
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
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
<u>식 심사에 응시하는 자</u>
14. 제38조제4항
15 제38주제5항

16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

17. ~ 39. (생 략)

② (생 략)

16의2.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

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

17. ~ 3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